

2026년 2차

가평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공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6년 2차 가평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15.

가 평 군 수

1. 접수기간: 2026.7.15. ~ 예산 소진 시까지

※ 1차 공고의 보급 대수, 우선순위 등은 2차 공고 사항으로 통합·변경 됨

2. 보급 대수

가. 전기승용차: 40대

나. 전기화물차: 12대

다. 전기승합차: 4대(일반 2, 어린이 2)

※ 보급 대수는 국비 성능보조금 단가 기준으로 산정하여, 구매 차종과 추가 보조금 신청 비율 등에 따라 실제 보급 대수와는 상이할 수 있음

3. 지원차종 및 금액

가. 【붙임1: 전기자동차 차종별 보조금 지원 금액】 참조

나. 향후 보조금 변동 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ev.or.kr>)을 통해 확인

4. 선정방법

가. 자격부여

- 신청서 접수순으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결격사유 확인
- 해당 단계는 대상자 선정이 아닌 서류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단계로 자격부여 상태에서 차량 출고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지원 신청 시 차량계약서의 계약일이 2차 공고일(7월15일) 이후의 계약이어야 함
-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접수 가능

- 자격부여 후 **예산 소진 시 자격부여 취소**

나. 대상자 선정

- 제작·수입사는 차량 출고가 확인되는 시점(출고 전 10일 이내)에 무공해 차통합누리집을 통해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
- 확정된 출고 일자가 10일 이내 차량만 지원가능 확인 요청(**차량배정을 증명할 수 있는 배정표 등 첨부 필수**)에 대해서만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후 10일 이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5. 지원한도

가. 화물·승용·승합 차종별 1대

나. 재지원 제한기간: 승용 2년, 화물 2년, 승합 2년

- 개인·개인사업자·법인: 1대

※ 개인사업자가 개인(대표자)으로 중복 지원 구매 시 지원불가

※ 법인·개인사업자의 경우 승합은 소형·어린이통학용 승합만 해당
그 외 승합은 한국환경공단 공모 신청

- 개인사업자, 법인: 재지원 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는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국비만 지급됨)

6. 보조금 지원대상 및 미지원 대상

가. 지원대상: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 ① 가평군에 연속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개인(만18세 이상) 혹은 개인사업자
 - **공동명의일** 경우 보조금 신청 및 차량등록증 상의 대표소유자가 보조금 지원 대상자격을 만족하여야 함(대표자에게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 차량등록 시 **사용본거지**가 **가평군**이어야 함
 - 택시·택배 등 영업용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용본거지**가 **가평군**이어야 함
- ② 가평군에 연속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 비영리민간단체, 사단, 재단 등의 경우는 개인사업자로 간주
- ③ 외국인의 경우 가평군에 거주하는 국내 영주권자(F5비자)만 가능
- ④ 구매 신청자는 지방세에 대한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⑤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가능
나. 미지원 대상

- 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 ② 전기자동차 등록 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
- ③ 개인사업자가 개인(대표자)으로 중복 지원 구매 시
- ④ 자동차등록증 또는 등록원부상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가평균’이 아닌 경우
- ⑤ 승용: 차량 기본가격이 8.5천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미지원
- ⑥ 화물: 소형·경형 차량 기본가격이 8.5천만원 이상은 보조금 미지원
- ⑦ 승합(소형승합, 어린이통학용 제외): 개인만 지원하며 법인, 개인사업자 미지원

7. 추가 보조금 : 구매자의 신청에 한해 추가 지원

- ①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해당자격을 갖춘 신청자(증빙 첨부)에 한하여 지원
- ② 차종별, 신청유형별로 추가 보조금 대상 및 지원금 확인 후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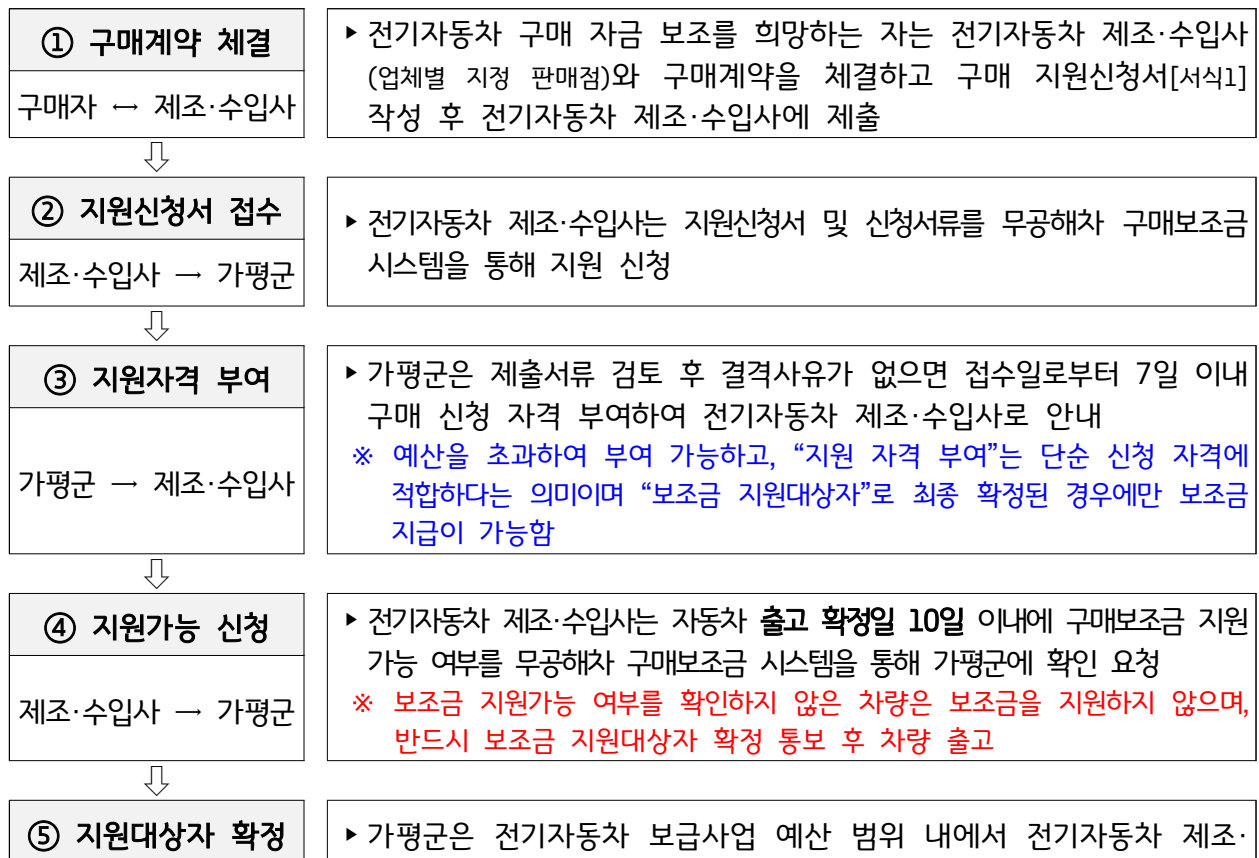
구분		세부내용
전기승용	공통사항	① 차상위 이하 계층 개인 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②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생애최초 개인 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③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는 개인 이 구매 시 자녀 수에 따라 정액 지원 -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 ※ (다자녀 기준)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태아는 불인정, 외국인(F5비자) 신청자는 자녀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 해당
	초소형	○ 지역 거점 사업(배달·관광 등) 구매 증빙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소·중·대형	① (전기택시 구입) 국비 250만원 추가 지원 ※ 구매자가 택시사업자 면허를 가진 경우 지원 가능 ※ 택시법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 ② 기존 노후 전기차(BMS 안전기능 업데이트 불가능한 차량에 한함) 폐차 시 국비 20만원 추가 지원 * 2026.1.1. 이후 폐차한 건부터 인정 * BMS 안전기능: 배터리 이상을 주차 중에도 감지하고 차주 및 제작사에 알리는 기능
전기화물	공통사항	① 차상위 이하 계층 개인 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 ② 소상공인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 ③ 농업인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④ 택배용 차량*으로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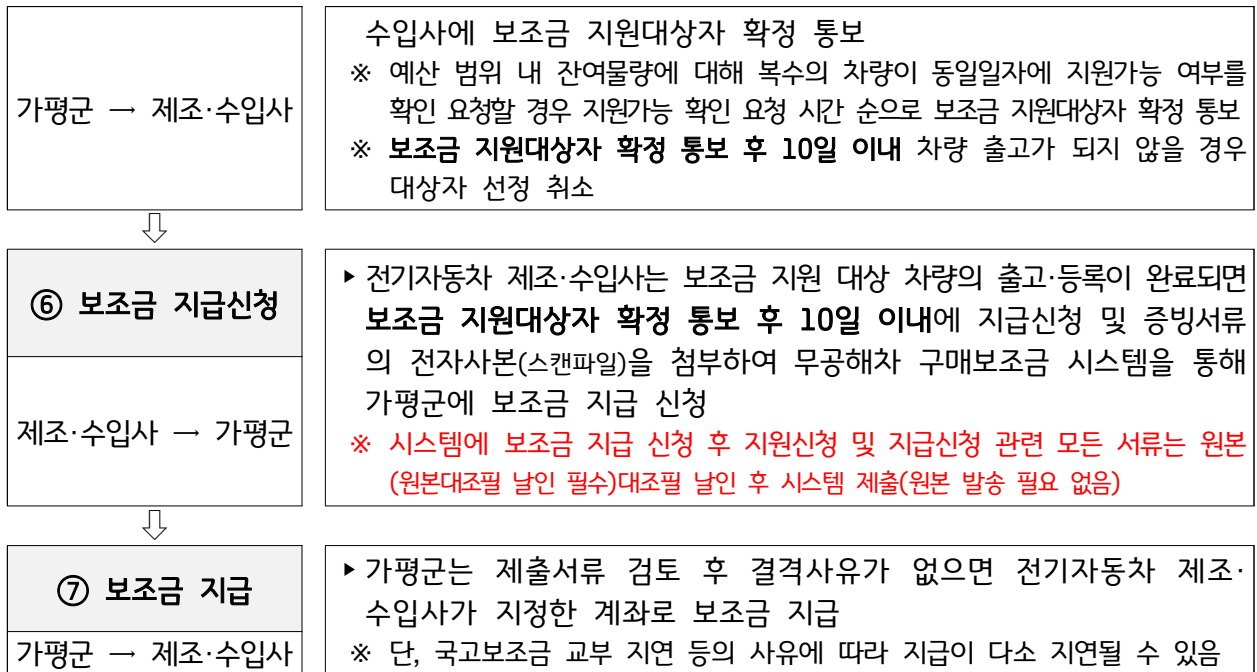
		*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⑤ 기존 경유화물차(노후 경유화물차 포함)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판매, 수출말소 등 포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차감 ※ 경유화물차 미보유자는 상기 규정 해당 없음
	초소형	○ 지역 거점 사업(배달·관광 등) 구매 증빙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전 환 지원금		○ 전기승용(소형, 중·대형), 전기화물(소형, 경형)을 구매하는 개인만 해당 ※ 개인사업자 지급 불가, 화물의 경우 전환지원금(개인)과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중복지원 불가 ○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교체(판매 또는 폐차)한 개인(단, 해당 차량을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환지원금 국비 100만원 이내, 지방비 30만원 이내 추가 지원 ※ 26.1.1일 이후 판매 또는 폐차 건부터 전환지원금 대상으로 인정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시 체크란에 Y 표시(별도 추가 신청 불가, 차량 출고·등록 후 지급 신청 시까지 전환지원금 관련 증빙서류 제출) ※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간 차량 증여·판매에 대해서는 전환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이를 위반 시 전환지원금이 환수조치

8. 신청절차

가. 신청방법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http://www.ev.or.kr/ps>)으로 신청

나. 신청절차





9.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 ①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② 원본대조필 날인 후 합본 PDF 파일로 시스템 첨부
- ③ 우편발송 불필요

나.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자격부여) 신청

- ① 구매지원신청서[서식1]
 - ‘구입차종’ 란에는 누리집 시스템 상 신청자종과 일치하도록 기재
- ② 차량구매계약서
 - 출고예정일(2개월 이내 이어야 함)
 - 계약번호와 차종은 누리집 시스템에 입력된 계약번호 및 신청차종과 일치하여야 함
 - 전산계약서(계약일 등 수기 수정 불인정)
- ③ 가평군에 3개월 이상 거주사실 증명 서류
 - (개인, 개인사업자) 주민등록초본(등본은 불필요)
 - 주소변동내역 포함
 - (법인, 기업, 공공기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 가평군 거주사실, 체류자격(F5비자) 확인 가능 서류

④ 추가서류

대 상 자	추가서류
▶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차 상 위 계 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다자녀 (18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차량 관련(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 (만 18세 이후 현재까지 과세 사실이 없어야 함)
▶ 택시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사업자등록증 - 개인사업자(택시)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에 '주사무소' 가 가평군일 경우 지원 가능
▶ 택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 허가증 '주사무소'가 가평군일 경우 지원 가능 ▶ 신규택배업자 - 차량출고 후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예비허가증
▶ 기존 노후 경유차(배출가 스 4등급 이상 자동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 해당차량 말소사실증명서 -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
▶ 소상공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 기업분류가 소상공인이 아닌 소기업은 대상이 아님
▶ 농업인	▶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 초소형 전기자동차 추가지원금 대상	▶ 지역거점사업 참여신청서[서식4], 사업계획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 어린이통학용 승합	▶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단계에서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신고증명서)
▶ 전환지원금	▶ 자동차등록원부(갑부): 내연기관(하이브리드 제외) 승용 또는 화물 차의 판매 및 폐차 여부, 해당 차량 보유기간(3년 이상 보유) ▶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간 차량 증여·판매에 대해서는 전환지원금을 지원 하지 않음

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

① 보조금 지급신청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출력 날인 후 스캔 첨부]

- ② 청렴이행서약서 [서식 3]
- ③ 전기자동차 구매 차량등록증 사본
- ④ 전자세금계산서
- ⑤ 통장사본(제작·수입사)
- ⑥ 사업자등록증(제작·수입사)
- ⑦ 지방세납세증명서(전기자동차 구매자(공동명의자 포함), 1개월 이내)

※ 보조금 지급신청서, 청렴이행서약서, 지방세납세증명서는 「가평군 지방 보조금 운영 기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함께 스캔 후 시스템 첨부

10. 접수방법

- 신청서류는 제조·수입사(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무공해차통합포털 (www.ev.or.kr) 내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제출하며 종이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11. 유의사항 및 의무준수 사항

가. 유의사항

- ①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10이내에 차량 출고를 완료해야 하며, 기간 초과 시 대상자 선정 취소
- ② 선정자 중 취소자 물량 범위에서 차순위대로 선정되며 10일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는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 됨
- ③ 차량 출고는 대상자 선정 후 출고하여야 하며, 자격부여 상태에서 차량 출고 시 보조금 미지급함
- ④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대상임
- ⑤ 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이 불가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가평군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변경 가능
- ⑥ 신청 시 미제출 된 추가지원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완료 후 소급

지급 불가

- ⑦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지 않고 차량 출고 시 보조금 지급 불가하며, 자동차 등록증에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가 가평군이어야 함
- ⑧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 ⑨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그 외 불분명한 경우에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가평군 결정에 따름

나. 의무사항

-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법정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매도 시 매수자가 적법절차에 따라 잔여 의무운행기간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 운행기간

- ② 의무운행기간 내 타 지자체로 전출하는 경우 보조금 환수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고의에 의한 위장전입으로 인한 전출 등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임
- ③ 의무운행기간 내 혹은 수출·그 이외의 사유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가평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④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이하 “보조금 수령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의 30%를 환수 조치함
- ⑤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하는 경우에도 가평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하되, 운행 기간에 따라 차액 환수 조치함.

< 등록말소 시 전기차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60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20%

○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 2022.6.30. 이후 경비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로서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일('24.5.13.) 당시 말소되지 않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

13.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 관련 문의처

기관	주요 역할	연락처
가평군 (환경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지자체별 보조금 지원 자격, 지방보조금 등 책정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자 선정	031-580-2441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정책 관련 문의	044-201-6947
한국환경공단	법인(전기승용 및 전기화물) 2대 이상 구매 시	032-590-9907
전기자동차 통합콜센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급속충전기 설치 신청	1661-0970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급속충전기 운영 - 급속충전기 고장신고, 회원카드 발급	1661-9408

- 붙임 1. (별첨1) 전기자동차 차종별 보조금 지원 금액 1부.
 2. (서식1)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1부.
 3. (서식2)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4. (서식3) 청렴 이행서약서 1부.
 5. (서식4) 지역거점사업 참여확인서 1부. 끝.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illegible]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가평군수 귀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준수해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가평군수 귀하

- ①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보조금 지급신청 등록
- ② 보조금 지급신청서 출력 후 명판 및 도장 날인 후 스캔하여 첨부

2026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가평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 하겠으며, 가평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가평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 벌칙 규정(제3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 양벌 규정(제40조)

-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사업자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과함

※ 보조금의 환수(34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2026. . .

전기자동차 구매자

(서명)

○○자동차(주) ○○지점

(명판 날인)

(대리점 직인)

업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가평군수 귀하

초소형 [] 승용 지역거점사업 참여
전기자동차 [] 화물 확인(신청)서

1. 기 관 명 :

2.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3. 주 소 :

4. 사업장 소재지 :

5. 지역거점사업 소재지 :

6. 사업내용

- 개요
- 용도
- 운영대수

별첨. 사업계획서

가평군의 000사업 참여를 확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000 대표이사

직인

전기자동차 등록말소 승인요청서

차 량 소 유 주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차 량 정 보				
차 명		최초등록일		
차 량 번 호		차 대 번 호		
말 소 사 유		말소(예정)일		
말 소 시 유 의 사 항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 시에는 가평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8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미환수하지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 2021. 1. 1. 이전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3항에 따라 배터리를 가평군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km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평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 말소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말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차량소유주) : (인)				
가평군수 귀하				
※ 제출서류 :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사고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 보험사의 차량 보상금 지급(또는 산출) 내역서, 전기화물차 판매의 경우는 차량번호, 계기판 사진				